

관계 법령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(당첨자)는 아래의 서류제출기한까지 신청자격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당첨자(예비당첨자) 자격확인서류 제출 방법

서류제출 기한	2024년 11월 21일(목) ~ 11월 22일(금) /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제출 방법	[태화강 유포라 팰라티움] 분양 홍보관 방문 접수
분양 홍보관 위치	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86-1번지 상가 105호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분양 홍보관 방문 후, 적격여부 및 부적격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■ 당첨자(예비당첨자) 자격확인 서류 (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[2024.11.01] 이후 “상세” 발급서류만 제출 가능)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자격확인 필수서류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청약자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신분증	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* 2020.12.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 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•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※본인 발급용(대리인 발급용 제출 불가)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(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)
해외 근무자 (단신 부임)	해외체류 관련 증명서류	청약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→ 파견 및 출장명령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 등 해외 취업자와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→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 → 비자 발급내역 /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*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 관련 증명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청약자 및 세대원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*비자 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	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	배우자 및 세대원	•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(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)
추가 필요서류 (가점제, 예비 당첨자)	복무확인서	청약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청약자	•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
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•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,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직계존속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	직계존속	•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(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) ※ 해외 체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	•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		•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(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) ※ 단,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	배우자	•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포함(1~3점)한 경우,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* (청약 홈 > 청약 자격확인 > 청약통장 > 순위확인서 발급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>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명 선택(청약통장가입은행) > 청구 방문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)	
당첨사실 확인서	배우자	•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 기간 점수를 포함(1~3점)한 경우,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* (청약 홈 > 청약소통방 > APT 당첨 사실 조회)	
제 3차 대리인 신청사 추가사항	위임장	청약자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(견본주택에 비치)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※본인 발급용(대리인 발급용 제출 불가) ※대리인 접수(계약)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	대리인 신분증, 도장	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
※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[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.11.01 이후 발행분]에 한하여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.

※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.

※주민등록표등본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번호 등 “상세” 요건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,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